

【 주간포커스 】

남유럽 국가의 과도한 공적연금 의존과 재정위기

이경희 전문연구위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 증대는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은 일부 남유럽 국가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를 초래하였다. 고령화와 연금제도의 성숙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공적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영(퇴적)연금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공적연금제도의 성숙도가 낮은 상태이지만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후소득원 다변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기 가능성이 높은 남유럽 4개국의 국가부채 규모와 재정적자 수준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
 - 2009년 이들 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3.2~115.8%이고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도 -5.2~-13.5%에 달하나
 -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규모와 재정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

<표 1> 유럽 국가의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비율(2009년, GDP 대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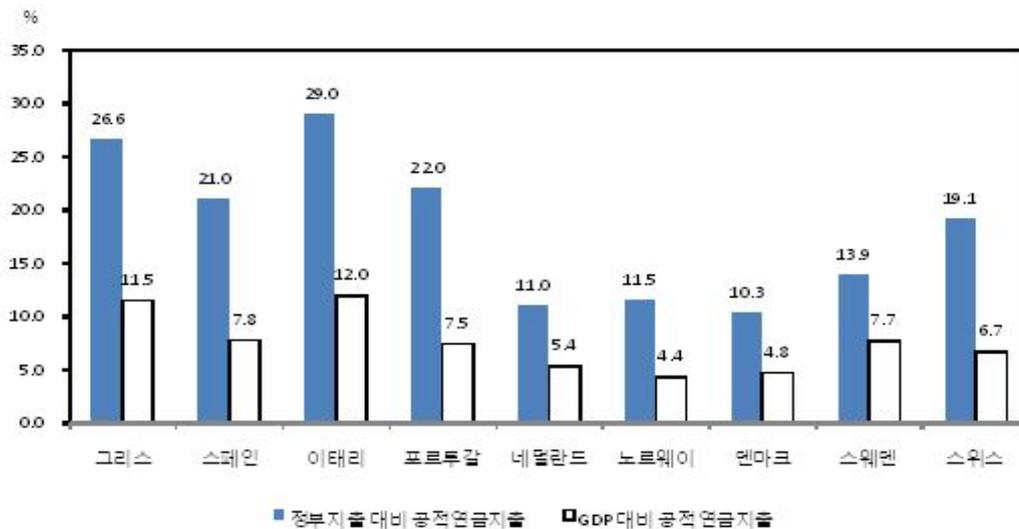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국가부채	115.1	53.2	115.8	76.8	60.4	43.7	41.6	42.3	-
재정수지	-13.5	-11.2	-5.2	-9.4	-5.3	9.7	-2.8	-1.1	1.6

주: 스위스는 2007년 기준
자료: Eurostat

-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심각한 남유럽 4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정부 지출에서 공적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 정부 지출에서 공적연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유럽 4개국의 경우 21.0~29.0%에 달하는 데 비해 하는 나머지 유럽 국가는 10.3~19.1% 수준
 - 특히, 동 비중은 이태리가 29%로 가장 높고 덴마크는 10.3%로 가장 낮음.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도 남유럽 4개국은 7.5~12.0%인데 반해 노르웨이, 덴마크는 5% 미만

<그림 1> 공적연금 지출 비중



주: 정부 지출과 GDP는 각각 2005년, 2006년 기준.
자료: Eurostat 및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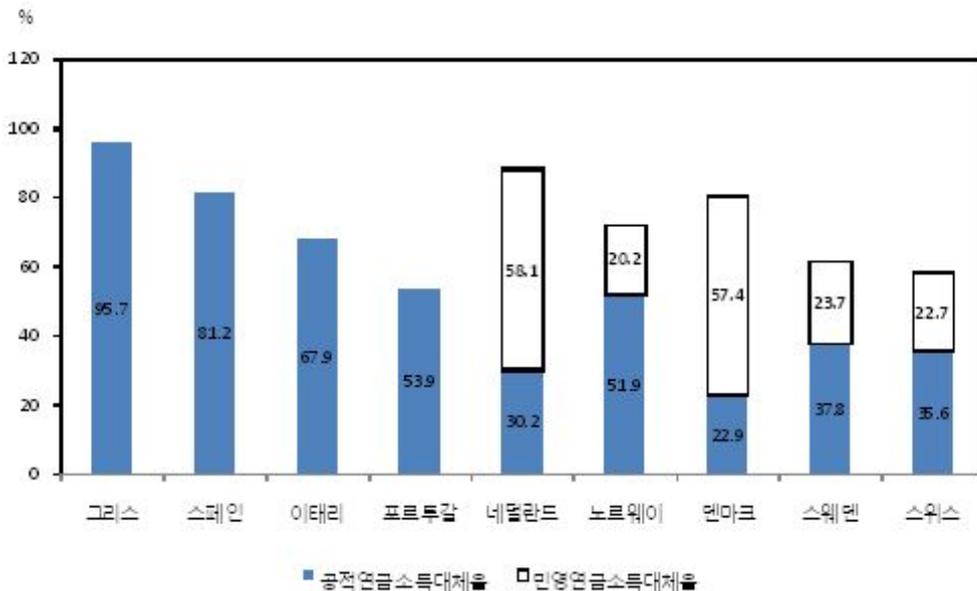
□ 또한 이들 남유럽 4개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상회

- 남유럽 4개국의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을 포함한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53.9~95.7%인데, 거의 대부분이 공적연금이며 민영연금을 통한 소득 확보는 매우 부진
 -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46%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의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이 매우 높은 수준
-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 수준은 58.3~88.3%로 남유럽 4개국과 유사하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2.9~51.9%에 불과
 - 민영연금 소득대체율이 20.2~58.1%에 달해 공적연금 부담을 상당 수준 경감
 -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덴마크는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이 80.3%에 달하는데 57.4%가 민영연금 소득대체율이며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2.9%에 불과

- 스웨덴의 경우에도 연금 전체의 소득대체율은 61.5%인데 민영연금 소득대체율은 23.7%,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7.8%

<그림 2>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소득대체율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09.

□ 남유럽 4개국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이처럼 공적연금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이 늦어져서 최근까지 관대한 공적연금제도가 유지되었기 때문임.

- 남유럽 4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6.2~32.5%로 OECD 평균인 23.8% 보다 크게 높고, 기대여명도 80세를 넘는 등 OECD 평균을 상회
-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연금 지급설계 및 연금 수급기간 측면에서 적절한 대처가 지연
 - 기대여명이 80세를 넘어선 그리스의 경우 최저 15년 가입 시 공적연금 수급권을 부여하였으며 55세부터 조기퇴직 후 연금수급이 가능한데, 2003년 이후에는 물가상승률(2.9~3.5%)을 상회하는 급여 인상(4~5%)을 단행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3%에 달하는 이탈리아에서는 2008년 들어서야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을 57세에서 58세로 높였으며 2011년부터 60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
 - 포르투갈에서도 2008년에 들어서야 연금급여 축소 정책을 단행

- 스페인은 15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50%에 달할 정도로 방만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연금개혁은 2008년에야 단행
 - o 이에 비해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축소해 왔음.
- 남유럽 4개국의 경우처럼 과도하게 높은 공적연금 의존과 관대한 공적연금 급여 정책은 국가 전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노후소득원을 민영(퇴직)연금 부문으로 다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o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 아직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망률 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연금급여 지출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KiRi